

## 장애 학생지원 운영규정

제정 : 2014. 03. 01.

폐지 : 2015. 08. 07.

제정 : 2015. 08. 07.

개정 : 2016. 08. 05.

개정 : 2018. 06. 01.

개정 : 2021. 02. 05.

담당 : 장애 학생지원센터(950-4332)

### 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명칭)	제3조(용어의 정의)	제4조(조직의 구성)
제5조(서비스 제공의 원칙)	제6조(서비스 내용)	제7조(교육동행인 제도 운영)	제8조(교육기자재)
제9조(시설·설비 지원)	제10조(위원회)	제11조(역할)	제12조(구성 및 운영)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 학칙 제76조에 따른 장애 학생의 학업 및 학생 생활지도 지원에 필요한 장애 학생 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본 조직의 명칭은 “장애 학생 지원센터”라 한다.(개정16.08.05)

#### 제3조(용어의 정의)

① 장애 학생이라 함은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였거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재적생을 말한다.

**제4조(조직의 구성)** ① 센터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, 담당직원 등으로 구성되며, 필요에 따라 전담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장애 학생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센터를 대표한다.

③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담당직원은 장애 학생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장애 학생 지원위원회 간사를 겸할 수 있다.

## 제2장 장애학생지원 서비스

**제5조(서비스 제공의 원칙)**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한 장애학생에게 교육, 수업, 학내 활동 및 진로 지도 등에 있어 서비스를 제공한다.(개정16.08.05)

**제6조(서비스 내용)** 장애학생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.

1.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
2. 신입생 및 재학생 휠체어 이용학생 수강과목 강의실 조정
3.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배려를 요청하는 서신 발송
4. 장애 영역에 따른 교육동행인 섭외 지원<개정21.2.5.>
5. 간담회 진행(년 1~2회)
6. 장애학생 취업 추천
7. 장학금 신청서 등 학사 행정 서류접수 대행
8. 교내행사 및 외부행사 시 이동 협조
9. 기타 제반 업무

**제7조(교육동행인 제도 운영)** 교육동행인을 요하는 장애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며,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동행인 제도를 운영한다.(개정16.08.05)<개정21.2.5.>

1. 학습 지원 교육동행인<개정21.2.5.>
2. 이동 보조 교육동행인<개정21.2.5.>
3. 삭제<21.2.5.>
4. 삭제<21.2.5.>
5. 생활 지원 교육동행인<신설21.2.5.>

**제8조(교육기자재)** 장애학생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기자재를 보유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시설·설비 지원)** ① 본교는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·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기자재 구입 등 시설·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② 본교는 장애학생이 교내 각 시설로 안전하게 진·출입 및 이동·접근하는데 적합하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.

1. 장애학생 전용 주차장
2. 장애학생 전용 화장실
3. 기타 장애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

## 제3장 장애학생지원위원회

**제10조(위원회)**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수·학습 지원 및 대학생활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(개정16.08.05)

**제11조(역할)** 장애학생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장애학생의 교수·학습, 대학생활의 지원 제도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
2. 장애 학생의 편의시설 제공 및 개선 사업에 관한 내용
3.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·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
4. 교내 장애학생 차별 피해 사례 신고 접수 및 조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

**제12조(구성 및 운영)** ① 위원회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되고, 교학팀장, 시설관리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(개정16.08.05)

②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(신설16.08.05)(개정18.06.01.)

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교학팀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.(신설16.08.05)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5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6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1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■ 장애학생지원 운영규정 [별지 제1호서식]<신설16.08.05><개정21.02.05.>

## 장애학생 등록 신청서

### 인적사항

학번		이름		학과	
학년	휴대전화			E-mail	

### 교육동행인 신청

교육동행인 요청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요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요청안함	교육동행인 희망인원	명
지원이 필요한 부분	➤ _____ ➤ _____ ➤ _____		

### 장애학생 지원

✎ 사전 수강 신청 제공 ✎ 하랑장학금 지급 <sup>2)</sup> ✎ 사물함 우선 배치 ✎ 장애학생 교육동행인 연계	✎ 각종 교내 시험 지원 <sup>1)</sup> ✎ 학습보조기기 안내 및 지원 ✎ 센터 자체 간담회 및 총장 초청 간담회 ✎ F.T 등 학교 행사시 편의제공 <sup>3)</sup>
---	---

위와 같이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학생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.

20    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(서명)

1) 단,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대상여부 결정  
 2)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본 대학교 「장학규정」을 준용한다.  
 3) 단,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대상여부 결정

## 한국성서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귀하

■ 장애학생지원 운영규정 [별지 제2호서식]<신설 16.08.01><개정21.02.05.>

## 장애학생 교육동행인 사업에 대한 서약서

## □ 장애학생 교육동행인 활동에 대한 범위

요일	시간1	활동1	시간2	활동2
	: ~ :		: ~ :	
	: ~ :		: ~ :	
	: ~ :		: ~ :	
	: ~ :		: ~ :	
	: ~ :		: ~ :	
	: ~ :		: ~ :	
	: ~ :		: ~ :	
	: ~ :		: ~ :	
	: ~ :		: ~ :	
	: ~ :		: ~ :	
❖ 비고사항 ❖				

\_\_\_\_\_(장) \_\_\_\_\_는(은) 교육동행인 \_\_\_\_\_(교) \_\_\_\_\_의 활동시간은 위와 같음을 인정하고, 그 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.

\_\_\_\_\_(교) \_\_\_\_\_는(은) \_\_\_\_\_(장) \_\_\_\_\_의 교육동행인으로서 위에서 약속한 활동시간을 준수하며 성심을 다하여 교육동행인 활동을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